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동 개정조례안은 2009. 1. 21.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2009. 1. 29.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개정사유

- 교육과학기술부의 「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」(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2008. 12. 10)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5% 감축 조정 배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고,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.

3. 근거법규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, 제14조의2, 제19조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
- 「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조정 배정」(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-6526, 2008. 12. 29)

4. 주요내용

- 현행조례 제1조 중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5조를 제33조로 수정함(안 제1조).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,154명에서 6,796명으로 358명을 감축함(안 제2조).

5.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「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」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5% 감축 조정되어 배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기 위한 것임.
-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 2년마다 8월 중에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, 공립의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정원 산식에 의하여 시·도교육청별로 공무원 정원을 산정하며, 교육감은 표준정원 산식에 의해 표준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2008년도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7,154명으로 책정되었으나, 이번 교과부의 조정에 따라 2008년도 표준정원의 95%에 해당하는 6,796명으로 정해졌으며, 기본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되 2012년까지 자연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임.
- 교과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은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과 기능을 조정해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학교, 학부모 등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,
- 표준정원 산식의 기준이 되는 「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6개 시·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을 일률적으로 5% 감축하는 것은 각 시·도의 학교수·학급수·지역교육청수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동 시행규칙의 표준정원 산식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,
-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각 시·도교육청의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시·도의 교육환경에 따라서는 행정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력의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.
- 또한 교과부에서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이 고시되었다고 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정원관리 계획 없이 하향식으로 총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

- 교육청의 중·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향식으로 책정되는 것이 교육자치와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
-